

## 韓國國際法學 三十年의 回顧

李 漢 基\*

### 一. 序 言

韓國法學 三十年을 回顧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方法論일 것이다. 특히 國際法 三十年을 回顧한다는 것은 그 接近方法에 있어 매우 어려운 問題이나, 우선 우리나라가 國際法을 어떻게 受容했는가의 問題와 結付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開國의 問題와 關聯되며, 또한 東洋에서 代表的 國家인 中國·日本·韓國의 開國의 問題와 結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여기서 東洋 三國의 國際法 受容史를 살펴 볼 必要가 있다. 즉 단순한 國際法 三十年史가 아니라 國際法의 導入問題로 살펴 볼 必要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우리 韓國의 國際法 受容狀況을 理解하기 위한 限度內에서 中國·日本의 受容史도 아울러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난 후에, 解放以後 本格的인 國際法의 活動 즉 大學講座의 開設·大韓國際法學會의 創立·國際協會의 韓國支部設置 등을 살펴 보고, 憲法規定과의 關係 및 韓國國際法學의 몇가지 當面課題들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 二. 東洋 三國의 國際法 受容

#### I. 中國의 國際法受容

19C 中葉 滿州朝의 中國은 구라파·미국 등과 條約關係에 들어갔으나 中國의 官吏들은 Western System of International Law를 알지 못했다. 이러한 中國에 西歐 國際法體系가 導入된 것은 1860年代 初期로서 中國은 約 100여년의 國際法 歷史를 갖고 있다.

당시 總督 임칙서(林則徐)가 美國人 醫師 Peter Parker에게 Vattel의 著作 「Le Droit des Gens」을 번역하도록 命令하였다. 이 번역은 國際法의 一部, 가령 封鎖·戰爭開始 등에 限한 것이었으며, 당시 中國의 廣範圍한 인테리階層에 널리 流布되지 못하였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862年 中國의 外交官 養成을 위해 北京에 「同文館」이 創設되고, 美國의 宣教師인 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1827—1916, 中國名 丁禮良)이 國際法 教授로서 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faculty에 參加하게 되었다. 이것이 最初의 國際法 講義였으며, 그는 여기서 Henry Wheaton의 「Element of International Law」를 번역하여 1863年 그 中國版 翻譯을 完成하고 이듬해인 1864년에 出版하게 되었다. 이것이 中國 國際法の 最初의 著作이며, 이 冊의 出現은 中國의 近代化 促進에 상당히 寄與하였다는 歷史的 意義를 가지며, 바로 이 冊이 또한 우리나라에 最初로 輸入된 國際法書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當時狀況으로 봐서 이 著作에 對한 外國人들의 비난이 심했는데, 당시 프랑스 代理公使 Klecskowsky는 중국의 협상자들이 國際法에 숙달하게 되면 그 請求를 Support하는 경우에 國際法 原則을 援用하여 자기들의 權利를 主張하게 되어 中國人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공공연히 反對하기까지 했다.

당시 中國朝廷은 Martin의 出版費 要求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과 프리시아간에 사건이 發生하여 Martin에 유리하게 狀況이 展開되었다. 그 당시 프리시아와 덴마크가 交戰中이었는데, 中國駐在 프리시아公使 Rehfuess가 天津에서 세 척의 덴마크 선박을 발견하고 이를 나포할 것을 프리시아군함에 命令했을 때, 中國은 自身이 가진 中立權의 侵犯에 대해 이를 保護할 目的으로 直接 번역된 Wheaton의 책으로부터 약간의 句節을 引用하여 결국 프리시아는 要求를 철회하고 中國이 勝利하였다는 에피소드는 중요한 參考가 될 것이다.

그 후 中國의 總理衙門(外務部)이 이 책의 出版을 決定하여 항구의 外國船舶을 取扱하는 當局者들에게 發送했고 많은 인테리들이 읽고 이 책에서 나오는 外國人에 대한 國際法上的 權利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뒤에도 많은 책들이 나왔으나 그중의 하나가 Charles de Martens가 쓴 「Diplomatic Guide」(1876)를 번역한 「星輶指掌」인데 이 책이 또한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된 것의 하나이다.

國際法の 內容을 뒤늦게나마 파악하려는 中國의 努力은 1860年以後 南京條約締結後 모든 나라와의 外交關係開設과 더불어 始作되었다. 外國과의 連絡의 目的으로 中國은 總理衙門을 設立하고 同文館을 開設하였고, 外國文化의 吸收를 위해 留學生을 派遣하였으며, 英佛 合同軍事行動의 結果 北京條約을 強制調印당하고 난후에 外國과의 交涉을 強化하기 위한 措置들을 취하는 여러 過程에서 Martin은 매우 중요한 役割을 했다. 따라서 그는 Western Public International Law를 中國에 導入한 最初의 恩人이라고 評價되고 있다.

## II. 日本의 國際法受容

日本이 外國과 正式外交關係에 들어가기 前까지 外部世界에 대한 態度는 中國의 경우와 大同小異하다.

당시 日本은 外國貿易을 나가사키(長崎)에 限定시키고, 이를 통해 모든 外交使節과의 通路를 가지려는 最大의 努力을 기울였다. 日本은 이 항구를 통해 西洋文物을 輸入하여 비록

鎖國主義下에서나마 現在 西歐의 狀況은 알 수 있었으나, 우리는 그러한 나가사끼를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뒤지고 말았다고 생각할 때 이 「나가사끼」란 말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금할 길 없는 말로 여겨진다.

하여튼 日本은 나가사끼를 통해 포르투갈·홀랜드의 文物을 導入하면서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등의 蘭學者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이 당시 매우 위험한 進歩思想을 가졌다고 해서 投獄당하고 苦難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開國을 부르짖고 蘭學을 導入하여 결국 우리보다 앞서게 되었다. 이러한 長崎가 없었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事實이라 하겠다.

日本은 1825年 外國人追放令까지 내리는 등 開國以前에는 中國과 같이 條約批准·領事交換·最惠國民條項 등을 理解하지 못했다.

Perry가 開國시킨 지 三年만인 1857年에 Townsend Harris 總領事가 도쿠가와 막부의 堀田라는 老中일행과 國際法에 깊은 關心을 表하는 同時에 그에게 처음 國際法을 가르쳤다.

日本은 鎖國政策을 펴긴 했지만 他力 즉 Perry의 武力에 의해 이것을 拋棄할 수 밖에 없었다는 開國事情으로 봐서, 幕府末葉·維新初期의 政治的 變動은 外交問題가 그 核心이 되었고 그것은 곧 國際法의 問題가 되었다. 그때 幕府와 維新政府는 外交交渉의 경우 外國使節들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國際法이란 말에 매우 당황했다. 開國까지 蘭學 200年의 基盤을 가진 日本이었지만 國際法이란 今時初聞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幕府는 곧 國際法 研究에 着手하게 되었다.

日本에 最初로 國際法 知識을 賦與한 사람은 上述한 T. Harris인데, 그가 堀田와 外交交渉을 벌일 때 곧잘 國際法을 援用했다. 즉 당시 幕府는 條約을 締結하면서도 公使의 特權인 日本內地自由通行權을 認定하지 않으므로 이를 認識시키기 위해서였다. 결국 日本의 鎖國論도 實質交渉을 당하고 보면 開國論·和親論으로 變更될 수 밖에 없었다.

開國前까지의 國際法에 대한 態度는 그러했으나 開國後의 approach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즉 國際法 研究에 全力을 다하고 國際法 遵守에 充實히 努力하여, 中國의 開國史에서와 같은 外國과의 衝突問題는 없었다. 日本이 國際法을 충실히 지킨 理由는, 당시 日本이 外國과 締結한 大部分의 條約은 不平等 條約이었기 때문에 이를 平等 條約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西歐에 대해 日本이 文明國(civilized nation)이란 印象을 주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國際法을 遵守했던 것이다. 그 후 西歐와 對等, 또는 그 以上の 國力 培養으로 富國強兵하게 된 後에는 도리어 國際法을 無視하는 態度로 나오긴 했으나, 하여튼 처음 導入時에는 國際法에의 尊敬과 엄격한 遵守를 행했다.

그 후 幕府는 1862年에 15名의 留學生을 派遣했는데, 그 중 니시아마에(西周), 쓰다신이적로(津田眞一郎), 에노모토부요(榎本武揚) 등의 維新初期의 功臣들이 有名하다. 西周는 Lyden大學에서 國際法 修學後 귀국하여 研究·講義한 것을 「萬國公法」이란 題目下에 出版하였다. 당시 國際法을 알고 공부한 사람은 전부 政府要職에 登용되어 國際法 知識을 活用

하는 先驅者의 役割을 해 왔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하다. 물론 國際法을 利用하여 明治政府에 反旗를 든 榎本武揚과 같은 例外的인 경우도 있다. 그밖에 후꾸지겐이찌로(福地源一郎)가 1865年 프랑스留學後 「Diplomatic Guide」를 번역하여 「外國交際公法」이란 題目으로 上下兩卷의 冊을 出版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일 것은, 「國際法」이란 말을 누가 처음 使用했느냐는 것인데, 歷史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日本의 미쓰구리·린쇼오(箕作麟祥)가 Woolsey의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1806)」를 번역해서 「國際法 一名 萬國公法」이란 題目으로 1873년에 出版한 冊이 비롯된다. 「萬國公法」이란 말은 Martin이 처음 썼으나, 「國際法」이란 用語는 미쓰구리가 처음 使用한 것이다. 그리하여 1881年 東京帝大에서 學科의 公式名稱으로 사용되고 다시 中國으로 건너가 使用되게 되었다.

그 후 日本에서 많은 國際法 書籍이 번역되었는데, 幕府末期인 1865년에 Martin의 漢譯本 「萬國公法」이 수입되어, 日本의 知識階級은 주로 이 책을 통해 國際法의 存在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이 책은 1868年 明治維新初의 開國方針決定에 重要한 役割을 했고 重要참고서로 經典과 같은 權威로 읽혀졌으며 外交官들의 必讀書가 되었다.

### Ⅲ. 舊韓末의 國際法導入

우리나라의 舊韓末의 國際法 導入過程에 관해서는 現在의 史家들도 알지를 못하고 文獻도 發見할 수가 없다. 그런데 李瑄根 博士의 著書속에서, 日本과의 江華條約締結 다음해인 1877년에 日本의 駐韓代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모(花房義質)가 北京 同文館發行 光緒 2年版 「星輶指掌」과 Martin의 「萬國公法」을 禮曹判書 趙寧夏에게 바쳤다는 記錄을 發見했다. 이에 대해 李博士는 그 이전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말하나 文獻의 不足으로 發見할 수가 없다.

韓國의 國際法은 日本에서 歷史上 처음으로 들어왔고 中國의 漢譯本이 日本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當時 舊韓末은 開化派와 保守派가 싸운 混亂期였으며, 當時 兩班儒林속에는 아직도 朱子學을 내세우고 鎖國과 攘夷를 외치고 있었는데 反해, 少壯政治人·知識層에서는 1877년의 「萬國公法」의 書籍을 읽고 싶어 했으며 當時의 開化人으로서는 萬國公法을 몰라서는 안 되겠다는 自覺이 생겼다고 李瑄根 博士의 「韓國史」에 記錄되어 있다.

崔益鉉(勉庵) 등의 保守派들은 開國을 反對하고 開國論을 비난하였으며, 「萬國公法」을 邪書로 規定하여 ‘이런 冊은 일일이 索出하여 鍾路에서 불살라 버려야 한다’는 極言까지 했다. 그밖에 江原道 儒生 洪在鶴의 上疏文, 洪時中의 上疏文 등을 보면 「萬國公法」을 不穩文書로 規定한 것이 分明하다. 이를 보면 開化派要人들이 國際法을 열심히 廣範圍하게 읽고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池錫泳의 上疏에서는 “萬國公法 등의 책들은 時務(世界情勢)를 아는 데 도움이 되므로 普及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이 國際法書籍 한 권을 놓고 開化派와 保守派가 크게 다투었는데, 萬國公法에 關心있는 사람은 進步의 思想家들이었으며, 늙은 儒學者들은 傳統에 사로잡혀 保守속에 해매

고 있는데 비해 이들은 先進外國思想을 吸收한 開化思想家로서 自己主張을 과감히 提示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當時 國際法을 受容한 開化思想의 所有者들이 이 法을 어떻게 理解하고 發展시켰으며 外交實際에 얼마나 利用했는지는 文獻不足으로 尙상히 알 도리가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開化派 要人들 즉 金玉均·金綺秀·朴泳澤 등이 萬國公法을 통해서 國際關係의 이론바 勢力均衡(Balance of Power)이란 原則을 체득했고, 이를 통해 國際法의 適用限界를 明確히 認識했던 文句가 發見된다는 것이다. 특히 박영효는 開化에 대한 上疏에서, 「비록 萬國公法이나 勢力均衡이 있더라도 國家가 스스로 自存의 힘을 갖지 않으면 維持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國際法의 限界를 正確히 測定한 말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古今東西를 통한 達見이라 할 수 있다. 또 1882年 韓美條約의 締結을 위해 天津에 가있던 金允植은 「수십 년이래 世界情勢가 날로 변해서 歐州列強과 東洋諸國이 모두 公法을 遵守하고 있으니 이를 버리면 孤立無援에 빠져 스스로 保全할 수 없다」고 하여 國際法 遵守를 強調하고 있다. 이같은 韓末 先覺者들의 말은 두고두고 새겨볼 말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花房 代理公使가 앞서 말한 두 권의 책을 증정한 理由는, 韓國政府가 江華條約을 締結해 놓고서도 거기에 規定된 公使의 서울駐在을 극력 忌避·不應하므로, 이는 萬國公法의 一部로서 淸國도 이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해서였다.

이같이 舊韓末 保守派·開化派의 抗爭은 複雜한 要因에 의해 條件지어졌으며, 國際法 受容에 있어 日本보다 한 걸음 늦은 關係로 開國後 列強의 角逐場으로 化했다가 드디어 韓日 合邦이란 이름으로 亡國을 經驗하게 되었고 따라서 國際社會에서 韓國이란 이름은 사라졌고 國際法의 圈外에 서서 이와는 無緣한 存在가 되고 말았다.

그 후 韓國이 또다시 國際法과 因緣을 갖게 된 것은 第二次 世界大戰後 獨立을 達成한 때이다. 이후 30年의 國際法 發達의 歷史를 回顧할 때, 특기할 것은 舊韓末의 國際法 導入 狀況과 比較해서 마찰없이 자연스럽게 導入되었다는 點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三. 韓國과 國際法

#### Ⅰ. 大學講座開設

獨立後 各 大學에서는 다투어서 國際法 講座를 設置하여 우선 서울大, 延大, 高大에서 國際法 講座를 開設했을 뿐 아니라 其他의 大學에서도 法科에는 반드시 國際法講座가 당연히 設置될 것으로 認識되게 되었다. 이 當時에 어떤 사람이 活動했고 어떤 著書가 나왔는가 하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 그다지 重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맨 初創期에 活動한 教授로서는 서울法大에서 國際法講義를 하셨던 故 朴觀淑 教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李建鏞 教授가, 지금은 刑法을 專攻하지만 當時에는 國際法을 專攻하여 상당히 좋은 論文도 썼었다. 그 다음으로는 朝鮮大學校에서 1946년부터 國際法 講義를 맡았던 朴在灑 教授를 들

수 있다. 여하간 여러 大學에서 배출된 많은 學者들이 나오고, 지금 現在는 各 大學마다 國際法 講座가 다 있고 또 教授들이 왕성히 研究하고 있다는 事實은 過去를 回想해 볼 때 대단히 흐뭇한 일이라 생각된다.

## II. 大韓國際法學會의 創立과 業績

(1) 國際法 30年을 回顧해 볼 때 大學講座開設보다 더 特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大韓國際法學會의 創立이다.

오늘날 이 地球上에는 많은 國際法學會가 存在하고 있다. 1873年 Belgium의 Kent에서 創設된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1895年 London에서 創設된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또 美國의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07), 英國의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등 이러한 先驅的인 學會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 후 늦게나마 소련, 스웨덴, 화란, 인도 등도 모두 學會를 갖고 있다.

그들의 設立動機와 目的은 반드시 同一하지는 않으나, 大韓國際法學會의 設立에 있어서도 特殊한 契機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1952年 1月 19일에 隣接海洋에 대한 主權宣言이 宣布되고, 1951年 韓日會談의 豫備會談과 1952年 第1次 韓日會談이 시작되면서 國際法에 대한 關心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8.15解放과 더불어 이 나라에 싹트기 시작한 國際法の 研究는 先進國 學者들의 理論을 導入·消化하기에 급급해서 實際問題를 다룰만한 여유가 그 當時에는 없었다. 그러나 大學 講壇의 教授들이 한 個別的·分散的 研究의 命脈을 保全했던 데 不過했던 國際法도, 平和線問題·韓日會談 등을 契機로 해서 實際的인 國際法 適用의 問題가 提起되었다. 이리하여 大韓國際法學會의 創設契機는 韓國이 當面한 國際法 問題의 研究와 實踐에 있었다고 보아야겠다.

이 學會의 產婆役으로 當時 外務部の 政務局長이었던 崔文卿氏, 政務課長이었던 金永周兩氏가 Initiative를 취했고, 民間學者로서 故 朴觀淑教授, 辯護士로 裴廷鉉氏, 그리고 本人도 한 사람으로 모여서 모델로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를 따서 우리도 하나의 學會를 만들 必要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생긴 것이다.

1953年 6月 16日 부산부두에 있던 L.C.I. 船內에서 創立總會를 가졌고 1956年 3月 15일에 論叢 第1號가 發行되었다. 이때 泰國의 우리교포 智栢山이란 사람이 Washington大學에 留學中 이 消息을 듣고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에 寄稿를 하여 그 雜誌의 상당한 Page가 우리 大韓國際法學會의 創立과 論文에 할애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이상스런게도 一致하는 것은 大韓國際法學會의 設立過程이 日本國際法學會의 設立過程과 대단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1902년에 日本國際法學會의 創立과 國際法雜誌의 發行은 特記할 事項이다. 그 雜誌는 1912년에 「國際法外交雜誌」라는 이름으로 改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學會는 太平洋戰爭때까지는 카네기平和財團(Carnegie En-

dowment for Peace)의 財政援助를 받았으나, 現在는 財政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한 것 같다. 이 日本의 國際法 雜誌는 매우 빠른 것인데, 1875년의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年報, 1874년의 France年報, 1899년의 Belgium年報에 다음가는 것으로서, 國內的인 雜誌로서는 세계에서 세번째 빠른 것이다.

이 學會創設과 雜誌發行은 條約改正事業의 성취를 위해서 政府·學者間의 協力이 要請되고 政府高官과 實力者의 理解와 援助에 의해 實現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學會가 平和線의 研究와 韓日會談을 위한 民間學者들의 뒷받침을 目的으로 設立된 것과 거의 비슷한 設立契機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對日講和條約 第4條 B項의 “日本國은 駐韓 美軍政의 財産, 日本財政處理의 效力을 承認한다”는 規定은 兪鎮午 博士의 積極推進의 功勞인데, 만약 이 規定이 없었더라면 후에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處地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張暎根, 洪璣基氏 등의 韓日會談代表들이 平和線의 國際法의 效力을 會談에서 강력히 거론함으로써 우리 學會의 政策에의 뒷받침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事實들은, 日本의 경우 明治時代의 大隈重信, 副島積臣, 榎本武揚, 大山巖 같은 建國功臣들이 萬國公法의 研究를 통해 新生日本의 獨立權·平等權을 對外交渉의 最大武器로 삼아 자신만만하게 列國과의 談判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學會創設이 주로 實際目的을 위한 官의 主導下에 이루어졌다는 事實에 있어 韓日間의 類似性을 나타낸다.

(2) 다음으로 이 學會의 業績을 살펴보면 모두 낱낱이 소개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外務部와 統一院에의 諮問을 들 수 있다. 1953年 11月 6日 外務部長官으로부터 本學會에 諮問해 온 海洋法에 관한 유엔國際委員會案에 대하여 學會로서 修正案을 提出한 바 있으며, 이는 우리 學會가 外務部의 諮問에 公式的으로 答信한 最初의 case일 것이다. 지금까지 本人이 알기로는 6個가량의 公式的인 答信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첫째로, 海洋國際法에 관한 協約에 관한 學會의 意見(1958年 10月 8日), 둘째로 유엔國際委員會에서 채택한 亡命權 草案에 대한 意見(1960年 8月 30日), 셋째로 1961年 11月 1日 大韓國際法學會의 受賞規定이 通過되어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의 Manley O. Hudson賞과 비슷한 目的을 가진 玄民賞과 振府賞이 決定되었으며, 넷째로 韓美 SOFA草案의 作成(1962年 8月 6日), 다섯째로 第三次 유엔海洋法會議에 관한 政策建議, 여섯째로 南北韓의 對유엔政策에 관한 法的 考察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統一院에 대한 것으로 1977年 7월에 Project의 形式으로 된 것이지만, 金燦奎教授의 「國際法에 대한 北傀의 態度」, 韓亨健 教授의 「北傀와 中·蘇와의 條約體裁에 관한 研究」, 朴鍾聲 教授의 「北傀의 海洋法 政策」, 金正均 教授의 「國際法上에서 본 北傀의 聯邦制度에 관한 研究」 등의 答信이 있었다.

그 밖에도 많은 Seminar와 講演이 있었다. 最初의 講演은 1954年 7月 10日 當時 會長이던 兪鎮午 博士의 「大韓國際法學會의 任務」라는 講演이었고, 1976年 12月 27日 「南北赤十字

會談의 最近動向과 그 展望」이라는 金鍊珠氏의 講演에 이르기까지 약 70회가량의 講演이 있었다. Seminar로서는 1973年 10月 8日 大韓國際法學會와 大韓赤十字社가 共同主擧한 國際人道法 Seminar가 春川世宗호텔에서 있었는데, 國際人道法은 우리나라의 處地에서 보아 매우 重要한 分科로서 이를 專門으로 하는 人道法研究所(所長 최현범)가 있다. 그 후 1975年 10月 3日 속리산 觀光호텔에서 개최된 國際法 Seminar에서 鄭一永 議員의 「第30次 유엔總會의 南北韓 戰略」과 尹致暎先生의 「建國初期의 秘話」가 發表되었다.

그 밖에 出版面에서는 論叢이 通卷 41·42號까지 나왔다. 論叢은 年 2回 發刊되는 것이나, 그동안 財政難으로 因하여 合併號가 나온 것이며 많은 부수를 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論文集으로서는 俞鎭午 會長의 回甲記念論文集·古稀記念論文集과 全禮鎔 會長의 回甲記念論文集, 그리고 本人의 回甲記念論文集이 나왔다.

그 밖에 產學財團의 Project와 유엔관계와 아산財團의 Project의 海洋法關係에도 몇몇 學者들이 參加하고 있다.

### Ⅲ. 國際協會의 韓國支部設置

한국 國際法學의 國際的 進出로서 London에 本部가 있는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에의 加入과 韓國 Branch의 設立을 들 수 있다. I.L.A.에의 加入申請書는 1964年 8月 16日 I.L.A. 第51次 東京總會에서 審議되었는데, 우리가 붙인 Korcan Branch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란 名稱에 대하여 共產側이 적극 反對하며 South Korean Branch로 할 것을 主張하므로 本人과 朴在瀟 教授와 故 申東旭 教授는 첫날부터 苦戰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방국 사람은 물론이고 印度 등의 中립국 代表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說得해 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는데, 한편 그 當時 우리 國內의 분위기는 S.K.B.로 얼어가면 귀국도 못할 지경이어서 더욱 난처했다. 그때 美國 Yale大學의 McDougal 教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名稱이란 그 學會가 원하는 것을 붙여 주어야지 왜 마음대로 學會의 名稱을 갈려 하느냐? 西獨의 Branch는 German Branch of I.L.A로 하면서 왜 韓國은 South Korean Branch of I.L.A로 붙이려 하느냐?”고 열변을 토해 주어서 司會보던 英國人 議長이 表決에 붙이려 할 때 共產側과 中立國側이 討議가 終結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소란까지 벌인 끝에 근소한 票差로 결국 勝利를 거두고 무사히 귀국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지금 우리나라에는 國內的인 組織으로 大韓國際法學會, 國際的인 組織으로 I.L.A. 韓國支部, 이 두 團體가 並立하고 있다. I.L.A.에는 曹圭甲 教授가 Deep Sea Mining Committee의 member로서 그동안 活動하였다.

### Ⅳ. 大韓民國憲法 第5條

다음으로 特記할 事項은 歷史上 처음으로 우리 憲法에 明文으로 國際法의 國內法에로의 受容規定을 갖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舊憲法 第7條와 같이 現行憲法 第5條에서 “이 憲法에 의해 締結·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



다”고 規定된 것이다. 여기에 관하여 解釋上 여러가지 異論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오늘날 「國際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International Law에서 Part of Land Law가 된 것이다.

#### 四. 韓國法學의 當面課題

平素 本人이 갖고 있던 생각을 몇가지 얘기해 보고자 한다. 韓國 國際法學의 當面課題는 많다. 모든 國際法의 問題가 當面課題라 볼 수도 있으나 특히 海洋法 問題, 그 중에서도 獨島問題는 매우 중요한 課題다. 지금까지 海洋法이나 獨島問題에 관한 論文은 많지만 이를 國際的으로 내놓아 손색이 없고 說得力과 對抗力을 갖춘 論文이 不足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國內 P.R.用이 아니라 國際 P.R.用으로 우리가 항상 論文의 質的 向上을 꾀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보다 더 廣範圍한 問題는, 오늘날 國際法이 各 方面으로부터 挑戰을 받고 있어서 國際法의 存在가 매우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우리가 어떻게 克服해 나가면서, 國內的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研究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큰 問題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가령—Moor, Hackworth, Whiteman 등이 만든 「Digest of International Law」와 같은 Korean Digest of Interantional Law를 편집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말하고 싶다. 물론 여기에는 財政的 뒷받침이 必要하지만 우선 第1卷만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에 問題意識을 갖고 힘써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